

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I 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1812호
2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3. 제출일자 : 2020. 8. 12.
4. 회부일자 : 2020. 8. 21.

II . 제안이유

1.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개정(2020. 4. 7.)으로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 발생시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해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.
2. 코로나-19 지역사고 수습본부 대책회의 결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과 같은 재난 발생시를 대비하여 학교운영위원의 선출기한 및 위원 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# III. 주요내용

1. “전자투표률”을“전자적 방법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. 이하“전자투표”라 한다)에 의한 투표 등을”로 수정하고, 후단의 “전자투표률”을“전자투표 등을”로 수정(안 제4조제1항)
2.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을서신, 우편, 전자투표 등을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고, 기한 내 선출이 어려울 때에는 선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 신설(안 제4조제5항)
3. 안 제4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임기개시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위원 임기는 2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조항 신설(안 제6조제4항)
4. 안 제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 위원 임기 및 위원장·부위원장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보는 조항 신설(안제6조제5항)
5. “영 제59조제6항에서 규정한 위원장”을“위원장”으로 수정(안제10조제1항)

### IV. 참고사항

1. 관계법규 : 조례안〔별첨 7〕

가.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59조(위원의 선출 등)

나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(정의)

2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조례안〔별첨2〕).

3. 협의 : 감사관, 정책·안전기획관,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협의완료

4. 기타

가. 신·구조문대비표: 조례안 [별첨 1]

나. 입법예고(2020. 4. 23. ~ 5. 12.) :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(조  
례안 [별첨3])

다. 교육규제심사 : 심사대상 교육규제 사무 없음.

라. 부패영향평가: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(조례안 [별첨 4])

마. 성별영향분석평가: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(조례안  
[별첨 5])

바. 학생인권영향평가: 조례안 [별첨 6]

## 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### 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20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 1812호로 제출되어 2020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에 따라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재난상황에서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(이하 '운영위원회'라 함) 구성하기 곤란한 경우나 대면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원 선출방식과 선출기한 조정 및 임기개시일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.

### 2. 주요 검토의견

#### 가. 개정취지에 대한 검토

- 동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,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이나 교원위원을 선출하기 어려운 경우 우편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해당 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.

이는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59조의1)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

1) 제59조(위원의 선출 등) ①국·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.

②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.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 우편투표, 전자적 방법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)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·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.

④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,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.

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,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.

⑥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.

로 학부모 전체회의 등을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통한 교육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바, 개정 취지 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## 나. 주요 조문별 검토

### 1) 안 제4조제1항 및 제5항

○ 안 제4조제1항은 현행 ‘전자투표’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59조제2항에 따른 ‘전자적 방법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. 이하 “전자투표”라 한다)에 의한 투표’로 구체화하였으며,

동조 제5항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같은 사회재난으로<sup>2)</sup> 학부모 전체회의, 학부모 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 등을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 서신, 우편, 전자투표 등 비대면 방식으로 선출하거나 선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○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 상황에서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지속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교육활동의 안정성을 위한 합리

---

⑦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,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.  
⑧ 국·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·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.

### 2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재난"이란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
가. 자연재난: 태풍, 홍수, 호우(豪雨), 강풍, 풍랑, 해일(海溢), 대설, 한파, 낙뢰, 가뭄, 폭염, 지진, 황사(黃砂), 조류(藻類) 대발생, 조수(潮水), 화산활동, 소행성·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
나. 사회재난: 화재·붕괴·폭발·교통사고(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)·화생방사고·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

다. 삭제 <2013. 8. 6.>

적인 개정으로 생각됩니다.

2) 안 제6조제4항 및 제5항(위원의 임기)

- 안 제6조제4항은 안 제4조제5항 후단에 따라 선출기한이 조정된 경우 차후 선출된 위원 임기개시일 역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안 제4조제5항과 연동되는 사항이며 그 임기도 2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, 이와 더불어 동조 제5항에서는 선출기한의 조정으로 기존 위원 임기가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.
-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 제6조는 선출기한의 조정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에서 조례 개정에서 다른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**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**

# 관계 법령

##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

[시행 2020. 8. 15.] [대통령령 제30829호, 2020. 7. 14., 일부개정]

제59조(위원의 선출 등) ① 국·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.

②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.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 우편투표, 전자적 방법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)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·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.

④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,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.

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,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.

⑥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.

⑦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,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.

⑧ 국·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·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.